

자동차보험료 산정방식 개선(안)

1.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도입

□ 실적통계를 기초로 요율 차등화

- 기존차량의 경우 보험금 지급실적이 집계되어 차량모델별 손해를 실적통계를 이용하여 적용등급을 결정하고 보험요율을 차등화
- o 다만,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새로이 출시된 차량은 1년간 기본율(100%)을 적용하고, 그 이후에는 새로운 적용등급을 마련하여 보험요율을 차등화
- 우선, 승용차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도입하고 점차 확대 시행 계획

□ 등급 및 등급요율의 결정

- 제도 도입으로 인한 보험가입자 혼란을 경감하기 위하여 먼저 $\pm 10\%$ 범위 내에서 차량모델별 위험도 등급 및 위험도가 적용되도록 하고, 추후 확대 시행
- o 차량모델별 11등급은 모델별 사고위험도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하고, 등급별 요율은 회사별 실적통계를 반영하여 자유화하되 전체 수입보험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급별 요율을 결정

차량모델별 표준등급 효율표(예시)

(단위 : %)

등 급	1	2	3	4	5	6	7	8	9	10	11
A사요율	90	92	94	96	98	100	102	104	106	108	110
B사요율	91		95		98	100	103		106	109	

주) 기본등급(100%) : 6등급

- 외제 차량의 경우에도 손해율 실적을 감안하여 외제 차량내에서 차종별·제작사별로 보험요율을 차등화

대형차종 외제차 제작사별 표준등급 효율표(예시)

(단위 : %)

등급	1	2	3	4	5	6	7
A사요율	92		97	100	103		109
B사요율	90	95		100	104	110	

주) 등급은 외제차 제작사별 평가등급임

- ⇒ 자기차량손해(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자는 영향이 없음*)를 담보한 가입자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가입자의 수입보험료에 변동이 없음

* '06. 3월말 현재 자기차량손해 미가입자(개인용 기준)

- 39%(개인용차량가입대수 : 1,040만대, 미가입차량 : 410만대)

2. 할인·할증제도 개선

□ 최저적용률(40%) 도달기간 및 적용률 자유화

- 가입자의 과거 사고유무 및 내용에 따라 할인·할증등급을 평가결정하고 회사별 실적통계를 기초로 최저적용률(40%) 도달기간 및 할인·할증 등급별 적용률을 최고적용률(200%)과 최저적용률(40%) 사이에서 자유화

□ 가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

- 보험가입자 안내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각 회사는 회사별 할인·할증제도 시행 최소 1개월 전에 회사별 할인·할증제도 시행내용을 공시하고, 한번 시행한 할인·할증제도는 일정기간(1년)내에 변경할 수 없음
- 또한, 장기무사고로 장기무사고보호등급에 도달한 가입자에 대해 장기무사고 계약자 보호장치(장기무사고보호등급 제도) 마련
- o 즉, 장기무사고로 장기무사고보호등급에 도달한 가입자는 1점사고* 유발시 할증되지 않도록 하고, 2점이상 사고**시 최초 1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할증등급을 계산토록 함

* 부상 13-14급의 경미한 사고, 대물 50만원 이상 사고

** 부상 8-12급의 사고 등

⇒ 적용률이 자유화되는 경우

- i) 전체 보험가입자간의 수입보험료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별로 기본보험요율을 수정토록 조치하고
- ii)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험인수거절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